

예산총칙

2025년도 추경 2 회

제 1 조 2025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 (단위:천원)

구 분	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	620,802,573	18,624,077
일반회계		615,477,378	18,464,321
특별회계		5,325,195	159,756
	기타특별회계	5,325,195	159,756
	지하수관리특별회계	66,570	1,997
	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	312,360	9,371
	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	74,939	2,248
	주차장특별회계	4,277,941	128,338
	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	593,385	17,802

제 2 조 세입·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 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2025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"명시이월사업조서"와 같다

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,700,677천원으로 한다.

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다음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
(1) 기준인건비 (2) 재해대책비

제 6 조 금회 추경 이후 연말까지 내시되는 국·시비보조금 등은 예산승인(명시이월 포함)된 것으로 간주 처리하고 이를 서면으로 의회에 보고한다.